

계속종사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

수급권자	성명		
	생년월일		
입상 경력	년도(제 회)	대회	직종 위(부)
명장 선정	년도	직종	명장
지급	지급액		지급 일시
	지급장소		
	수령 시 지참물		

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1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직인